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1. 이 부속서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5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자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¹⁾

라.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1) 제1항다호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되고 HS 제87류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30퍼센트, 이행 2년차의 첫째 일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 이행 3년차의 첫째 일에 추가적으로 20퍼센트, 그리고 이행 4년차의 첫째 일에 추가적으로 20퍼센트를 인하하여,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차.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타.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1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파.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기준세율의 5퍼센트를 인한다. 관세는 이행 3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5퍼

센트, 이행 4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7퍼센트,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행 6년차까지 매년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7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7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 이행 8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인하한다. 관세는 이행 9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2퍼센트,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17퍼센트, 그리고 이행 11년차의 첫째 날에 추가적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인하하여,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0퍼센트로 인하되어, 이행 2년차까지 종가세 20퍼센트로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의 첫째 날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거.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9년차까지 기준세율을 유지한다. 관세는 이행 10년차의 첫째 날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너. 당사자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6-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어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되고, 이행 17년차의 첫째 날과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더. 단계별 양허유형 “S-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2)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4퍼센트로 인하되어, 이행 2년차까지 종가세 24퍼센트로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 차 첫째 날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러. 단계별 양허유형 “S-B”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되어, 이행 2년차까지 종가세 30퍼센트로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 차 첫째 날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그 이후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머.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 관세율이 유지된다.

버.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자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기간 중의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 최소한, 유럽연합 당사자의 경우 가장 근접한 0.1유로 센트 단위로 표

시되도록,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자 양허표의 목적상, 연도별 감축은 제5항에서 정의된 해당 연도의 첫째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5. 이 부속서 및 부록 2-가-1의 목적상,

가.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나. 이행 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다. 이행 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라. 이행 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마. 이행 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바. 이행 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사. 이행 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아. 이행 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자. 이행 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차. 이행 1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카. 이행 1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타. 이행 12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1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개월을 말한다.

- 파. **이행 13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2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하. **이행 14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3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거. **이행 15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4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너. **이행 16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5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더. **이행 17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6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러. **이행 18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7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머. **이행 19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8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 버. **이행 20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19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 그리고
- 서. **이행 21년차**란 이 협정의 발효 20주년이 되는 날을 시작으로 12 개월을 말한다.